

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
제243회 임시회(2020. 9. 9.)

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

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
복지도시위원회

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

검 토 보 고

의안 번호	20-106
----------	--------

2020. 9. 9.
전문위원 신준호

1. 제출경위

- 가. 제 출 자 : 마포구청장(건축과)
- 나. 제 출 일 : 2020. 8. 25.
- 다. 회 부 일 : 2020. 8. 26.

2. 제출이유

「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」에서 위임된 사항과 우리구 공공디자인 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구민의 문화 향유권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목적, 정의 및 구청장의 책무 등 규정(안 제1조~안 제6조)
- 나.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및 가이드라인 수립 규정(안 제7조~안 제11조)
- 다.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정(안 제12조~안 제23조)
- 라. 공공디자인 사업의 추진 규정(안 제24조~안 제25조)
- 마. 관계기관의 협력 및 교육 홍보 등(안 제26조~안 제29조)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」
- 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첨부

다. 기타

1) 입법예고 : 2020. 7. 16.~ 2020. 8. 5.(의견 없음)

2) 행정규제 사전심사 : 원안동의

3) 부패영향자율평가 : 원안동의

4) 성별영향분석평가 : 의견 있음.

⇒안 제18조의 소위원회 구성 시 성별을 고려하도록 권고(의견 반영)

5) 위원회 사전심사 : 원안동의

5. 검토의견

가. 조례 제정 배경

「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정(2016.2.3.)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우리구 공공디자인 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구민의 문화 향유권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것임.

나. 주요 조문 검토

- 본 제정조례의 구조적 체계는 총칙 6개, 본칙 23개, 부칙 7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음. 안 제1조에서 안 제6조에는 조례의 목적, 공공디자인의 정의, 구청장의 책무와 구민 등의 참여, 다른 조례와의 관계 및 공공디자인의 기본 원칙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음.
- 안 제7조에서 안 제11조는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및 가이드라인 수립,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유지·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,
- 안 제12조에서 안 제23조는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, 운영과 심의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,
- 안 제24조~안 제29조는 공공디자인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전담부서의 설치 및 학술기관·관계 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과 공공디자인

진흥을 위한 교육·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.

다. 종합 의견

- 본 제정조례안은 「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3조, 제6조, 제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을 위하여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을 별도로 수립·시행하고, 필요한 재원 확충과 운영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, 심의 및 조정 기능의 위원회를 두고 이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어 법령체계의 정합성을 확보하였음.
- 그 동안 “공공디자인”은 학계 및 업계에서 통일된 정의 없이 일반적으로 “공공장소의 여러 장비·장치를 보다 합리적으로 꾸미는 일¹⁾”이라는 개념으로 사용되었음.
- 기존 「마포구 도시디자인 조례」에서도 도시경관의 중점을 둔 도시발전·보전 수준의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음.
- 하지만, 법 제2조에 따라 공공디자인을 “일반 공중을 위하여 국가, 지방자치단체, 지방공기업, 공공기관이 조성·제작·설치·운영 또는 관리하는 공공시설물 전반에 대하여 공공성과 심미성 향상을 위한 디자인의 행위 및 결과물”로 규정함에 따라
- 제정 조례안을 통하여 디자인을 “매체” 중심으로 이해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사전구상 작업을 문화적 패러다임과 공간·시설·물품과 같은 산업적 패러다임으로 구분하여 구체적인 지방자치단체의 지역 이미지 개선과 지역관광 활성화 등에 발전을 기대할 수 있어 긍정적으로 보임.
- 다만, 법률이 제정된 날을 보았을 때, 조례 제정의 시의성은 다소 미흡

1) 김소라(2009), “공공미술과 공공디자인, 그리고 도시”. 대한건축학회 네이버 지식백과 등

해 보이므로, 향후, 공공디자인 사업 추진에 있어서 좀 더 발빠른 문화적·사회적 가치에 초점을 맞추고 공공의 이익과 안전을 최우선하여 조화로운 도시환경 조성 및 각종 공공 문제 해결에 기여 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할 것임.

[관 계 법 령]

「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」(약칭 : 공공디자인법)

제3조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

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고, 필요한 자원의 확충과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제6조(지역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 등)

- ①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(이하 "시·도지사"라 한다)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은 종합계획에 따라 지역 여건을 고려한 지역 공공디자인 진흥계획(이하 "지역계획"이라 한다)을 별도로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- ②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지역계획을 제9조에 따른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·변경한다.
- ③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지역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관할 지역의 해당 공공시설물을 관리하는 국가기관등의 장은 지역계획의 수립·시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.
- ④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지역계획 수립·변경에 관한 사항을 지역 주민들에게 알려야 하며, 지역 주민 및 지역계획의 수립·변경에 따른 이해관계자는 지역계획을 수립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역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제안할 수 있다.
- ⑤ 제1항에 따른 지역계획의 수립·시행, 제4항에 따른 지역계획 수립에 관한 안내 및 제안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제9조(지역위원회)

- ① 지역계획의 수립·시행, 제15조제2항에 따른 추진협의체에 대한 자문 및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 소속으로 지역의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한 위원회(이하 "지역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- ② 지역위원회의 위원 중에는 공공디자인과 관련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이 포함되어야 한다.
- ③ 그 밖에 지역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